

지적사항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 ☆☆☆☆☆☆센터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신분상 조치] 문책 3명

[제 목] ☆☆☆☆☆☆센터 임시사무실 설치공사 부적정

[지 적 사 항]

- 「지방재정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센터에서는 임시사무실을 설치함에 있어, ☆☆☆☆☆☆센터-1165(2014.3.17)호로 도지사 방침결재를 득한 ☆☆☆☆☆☆센터 청사 신축계획에는 임시청사 소요예산으로 30백만원이 계획되어 있음에도, 2015. 7.1.부터 2016. 3. 25.까지 9개월 정도 사용계획인 임시사무실을 경량철골조(연면적 : 210㎡) 구조에 사무실, 실험실, 창고, 소장실 등 내부 실을 구획하여 천정텍스 설치, 전기·통신공사 등 영구 건축물을 시공함으로써 임시청사 설치비로 92,694천원을 과다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 2014.11.20.○○시 ΩΩ과에서 작성한 건축 협의 서류에는 위 건축물은 2016. 11. 11.까지 존치되는 가설건축물로 기재되어 있는 등 2014. 11. 시 설공사 발주 시에 동 건축물이 임시청사로 사용된 이후 철거 또는 활용방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아니하였고, 감사일(2016. 4. 8) 현재까지도 동 건축물에 대한 활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앞으로 임시청사에 대해 적절한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시기 바라며,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 시에는 변경 결재를 받는 등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주시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자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 ☆☆☆☆☆센터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신분상 조치] 문책 1명

[제 목] 시험연구동 건립 공사 추진 부적정

[지 적 사 항]

- ☆☆☆☆☆센터에서는 시험연구동을 건립함에 있어, 2012년 당초예산 편성 시 시험연구동 연면적을 660㎡(소요예산액 : 600백만원)로 계획하였다가 2013년 연면적 890.14㎡로 변경되어 사업비가 775백만원으로 증가되었으나, 2012년 당초예산으로 확보한 600백만원 중 576백만원이 명시이월됨에 따라 2013년 3월 공사 발주 시에 명시이월 예산(576백만원)과 2013년 당초예산(182백만원)을 통합할 경우 동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모두 확보되어 있었고, 공사를 분할하여 시공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동 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사육시설 및 생태공원 개보수공사를 위해 확보한 예산 182백만원을 시험연구동 건립에 집행하면서 예산 변경사용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앞으로 동일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는 통합발주하여 주시고, 예산 변경사용 시는 관련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 ☆☆☆☆☆☆센터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신분상 조치] 문책 3명

[제 목] 2013년 ☆☆☆☆☆☆센터 사육시설 개보수공사 추진 부적정

[지 적 사 항]

가. 공사용 자재 과다설계로 예산 낭비

- ☆☆☆☆☆☆센터에서는 사육시설 개보수공사 설계서에는 여과제가 8,000매로 되어 있으나, 실제 공사에는 5,360매만 사용하였고, 나머지 2,640매를 부적정하게 창고에 보관함으로써 여과제 구입 재료비 및 노무비 등 7,252천원을 낭비한 사실이 있다.

나. 직접시공계획서 확인 소홀 및 위반자에 대한 제재 조치 미이행

- ☆☆☆☆☆☆센터에서는 도급사인 (주)♂♂가 2013. 12. 10. 도급액 159,390천원 중 114,839천원(하도급 부분 비율 : 82.08%)을 하도급 하는 것으로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2014. 1. 2. 제출한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통보서에도 도급사인 (주)♂♂가 하도급 업체인 (주)⊗⊗⊗⊗⊗에 113,593천원(하도급 부분 비율 : 71.26%)을 하도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주)♂♂가 직접시공 비율(50% 이상)을 위반하였음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 상의 능률 등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서면으로 하도급 부분 비율을 조정하거나 위반 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앞으로 설계서를 작성하거나 검수 시에 관급자재를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시공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신분상 조치] 문책 1명

[제 목] 여과기 설치공사 실시설계 부적정

[지 적 사 항]

-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2014. 3. 12. △△△△△(주)와 1개사와 “외해양식동 생산부대 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시행코자 28,041천원에 계약을 체결한 후 해수펌프, 취수관로시설, 여과기시설, 여과기배관시설 등에 대한 실시설계를 2014. 3. 14.부터 2014. 6. 2.까지 시행한 사실이 있고, 당시 여과기 공법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아 실시설계 완료된 공법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함에 따라 (주)△△△△△△△△과 2015. 2. 26. 4,950천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여과기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추가로 실시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이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외해양식동 생산시설 여과기 설치와 관련하여 공법검토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실시설계 용역을 두 번을 시행하였으며, 당초 실시설계비 28,041천원 중 “원심상향식 모래여과기”설계에 소요된 비용 19,162천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